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7
----------	-----

2021. 2. 18.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복진경 의원 등 8명

나. 상정의결

-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2. 18.)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변경함(안 제2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복진경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현행 조례 제정(2018년 12월 14일)이후, 조례 시행에 따른 그간의 지원실적(지원대상자, 참여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령 기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현황(예상대상자, 예상참여율 등) 설명을 통한 확대 사유 및 필요성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은 별표와 같이 파악(2021년 1월 현재)된 바, 이와 연계한 서울시 지원과의 중복여부, 각 자치구별 연령 상이(相異)에 따른 문제 여부 등의 설명이 요구됨

이에 본 건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9개 구 제정, 16개 구 미제정)

연번	구별	조례명	제/개정일	비고
1	서울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2020.5.19.	65세
2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19.5.29.	70세
3	강북구			없음
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2020.1.1.	70세
5	관악구			없음
6	광진구			없음
7	구로구			없음
8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19.7.19.	70세
9	노원구			없음
10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19.2.14.	70세
1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19.3.28.	65세
12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19.9.19.	70세
13	마포구			없음
14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19.7.10.	70세
15	서초구			없음
16	성동구			없음
17	성북구			없음
18	송파구			없음
19	양천구			없음
20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19.6.28.	70세
21	용산구			없음
22	은평구			없음
23	종로구			없음
24	중구			없음
25	중랑구			없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현재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 답 변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음
- 질 의 :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는지
- 답 변 : 처음에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동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시비 50%를 지원받고 있음
- 질 의 : 서울시 조례에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본 조례에 꼭 적용해야 하는지
- 답 변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상호 관계성을 맞춰주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진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7
----------	-----

발의연월일 : 2021. 2. 5.

발 의 자 : 복진경·이향숙·문백한·  
한용대·이상애·박다미·  
김진홍·최남일(이상8인)

###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기준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변경함(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0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70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u>65세</u> ----- -.

## 【참고법령】

###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19. (생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